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412호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실증·시범구역에서의 규제특례,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·육성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768호, 2023.10.24. 공포, 2024.4.25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로 정하고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·조정할 안건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(안 제106조제3항)

- 나.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심항공교통 관계부처인 국방부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추가(안 별표 4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교통정책총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 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
- 전화(☎) 044-201-3786, 3793 / 팩스 044-201-5581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(전화 044-201-3786, 37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